

예산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

- 검 토 보 고 -

□ 제안이유

-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 (안 제2조)
 - 인감업무담당자 및 직무대리자
- 재정보증 설정 및 방법, 기간, 재정보증 한도액. (안 제4조, 제5조)
 - 재정보증 설정 :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
 - 재정보증 방법 : 보증보험 또는 공제
 - 재정보증 기간 : 1년(매년 갱신)
 - 재정보증 한도액 : 1억원 이상
-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 (안 제6조)
-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(안 제7조)
 -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세입금으로 징수
 -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시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액 변상

□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인감증명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7867호, 2002.12.31)
-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표준안(충청남도행정13210-219(2003. 1. 28))

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하는 제정조례로서
-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·면·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보완 사항으로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며,
- 인감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와 더불어 인감업무 수행 및 인감증명 발급의 전산화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
- 인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인의 재산 및 보증 등에 따른 문제점이 항상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령의 숙지 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임.
- 또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대리 발생시 공백이 없도록 하고, 재정보증의 설정, 체결, 개신 등 제반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